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26136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261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4. 4 선고 2002나65297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농협중앙회 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BA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김C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BB)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4. 선고 2002나65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EA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군산지부는 1995. 9. 7. 의료법인 KK재단(이하 'FA재단'이라 한다)에 병원신축자금 2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일을 2005. 9.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FA재단은 1998. 11.경 경영악화로 부도에 이르러 농협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농협중앙회는 2000. 6. 16.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FA재단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FA재단은 1995. 1. 19.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의사 3명이 필요하다는 대학동문 김DA의 부탁으로 FA재단의 설립발기인과 이사가 된 사실, FA재단이 농협중앙회 군산지부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음에 있어 이사인 피고의 연대보증이 필요하게 되자 FA재단의 부이사장 김DA은 1995. 9. 7. 피고에게 20억 원의 연대보증을 부탁하고, 김DA의 형인 이사장 김DB이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고 한다)를 피고의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근보증서상에는 반드시 보증인이 서명란에 자필로 기재한 후 날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DB은 이 사건 근보증서에 피고의 서명을 받은 다음 FA재단으로 돌아가 그 곳에서 새겨서 가지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고 농협중앙회 군산지부에 제출하여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근보증서에는 연대보증인란에 주소와 서명, 그리고 보증한도가 26억 원이라는 기재만 있고, 피보증채무 표시란의 채무자와 피보증채무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김DB이 다른 이사들을 보증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데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피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근보증서에 서명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는 한편, 위와 같이 보증한도가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근보증서의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서명만 한 점,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자신이 소지하는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날인하지 못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날인만을 위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또 피고는 FA재단측의 부탁에 의하여 설립발기인과 이사가

되었으나 FA재단 이사장의 동생과 대학동문이라는 외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활동은 하지 않고 이사로서 등재만 되어 있었던 점, 보증인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는 채무자의 채무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특히 근보증일 경우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크게 생길 수 있는데도 주채무자 및 피보증채무의 범위조차 특정되지도 않은 양식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피보증채무의 표시란의 채무자와 피보증채무의 범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근보증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농협중앙회 군산지부에 대하여 FA재단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근보증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의 효과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피보증채무의 범위는 보증계약에 있어 본질적 사항으로 계약의 중요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그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믿을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이 사건 근보증서에 채무자와 피보증채무의 범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그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1995. 1. 19. 설립된 FA재단은 농협중앙회 군산지부로부터 이 ○○병원신축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사인 피고의 연대보증이 필요하게 된 사실, FA재단의 부이사장 김DA은 같은 해 9. 7.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재단 이사장인 형(김DB)이 찾아갈 것이다. 네가 이사이니 보증 좀 서 달라.'고 부탁하고, 이어서 김DB이 그 날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사건 근보증서를 제시하여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김DA과 김D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는 점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여신규정에는 연대보증인의 근보증한도액은 대출할 금액의 1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근보증서는 4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면에는 '기업고용임원용 근보증서', 'EA조합 앞'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둘째 면에는 보증한도란이 원래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그 곳에 '이십 육 억 원 정'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자신이 이사로 취임한 FA재단이 주채무자가 되어 농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20억 원을 대출받는다라는 점과 피고가 FA재단의 이사로서 위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26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비록 이 사건 근보증서에 주채무자 및 피보증채무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와 피고 사이에서는 주채무자 및 피보증채무의 범위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근보증서의 넷째 면에는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이라는 제목 아래 "계약서의 모든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읽으신 다음 피보험채무(이는 '피보증채무'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범위, 보증기간 등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보증서, 약정서 등)상 금액을 자필 기재 또는 확인하시고 서명란도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후 날인하셔야 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문구의 표현이나 이 사건 근보증서의 약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인식하여 보증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한 후 보증의사를 표시하라고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날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식행위가 되어 그 결과 보증인의 날인이 없으면 보증계약의 다른 성립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더라도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다5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보증서에는 '보증인은 채무자가 귀(회, 조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에 관한 다음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서의 첫째 면에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성명 우측의 날인란에 피고의 싸인{피고의 성명 중 두 번째 글자의 한자(漢字)인 '光'자를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하였고, 근보증서 둘째 면의 보증한도란에 '이십 육 억 원 정'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근보증서 셋째 면의 '농협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함' 부분에 피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다음 그 우측의 날인란에 피고의 위 싸인을 하였고, 근보증서 넷째 면에 '위의 내용을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다음 그 우측의 날인란에 피고의 위 싸인을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근보증서를 김DB에게 넘겨 주면서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앞뒷면을 복사하여 함께 건네준 사실, 김DB은 이 사건 근보증서와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농협중앙회 군산지부에 제출하면서 피고의 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근보증서 등이 제출됨으로써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근보증서의 문언의 내용, 이 사건 근보증서가 작성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근보증서의 작성으로 달성되는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서의 작성 당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의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보증계약이 중요 부분에 대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증계약의 성립 또는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